

녹색성장 연구 10-16-7

()

-

(EEG) -

이 준 서

()

- (EEG) -

A Legislative Study on Energy Law for the
Green Growth

- Erneuerbare-Energien-Gesetz(EEG) -

연구자 : 이준서(부연구위원)

Lee, Jun-Seo

2010. 10. 29.

재생에너지우선법(재생에너지법-EEG)

재생에너지법

발행일자: 2008년 10월 25일

법률명:

“마지막으로 2009년 12월 22일자 법(BGBl. I S. 3950) 제12조로 개정된 2008년 10월 25일자 재생에너지법(BGBl. I S. 2074)”

현 황: 2009년 12월 22일자 법 제12조(I3950)로 개정됨

각 주

문서원용: 2009년 1월 1일부터

이 법은 2008년 10월 25일자 법 제1조(I2074)로 연방하원에 의해 의결되었다. 이 법 제7조 제1문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정 의

제 4 조 법적 채무관계

제 2 장 연결, 구매, 송전, 배전

제 1 절 총 칙

제 5 조 연 결

제 6 조 기술 및 운영상의 요건

제 7 조 연결의 설치 및 사용

제 8 조 구매, 송전, 배전

제 2 절 용량 확장 및 공급 매니지먼트

제 9 조 공급망의 용량 확장

제10조 손해배상

제11조 공급 매니지먼트

제12조 사정변경 조항

제 3 절 비 용

제13조 공급망 연결

제14조 용량 확장

제15조 계약상의 합의

제 3 장 요 금

제 1 절 일반 요금 규정

제16조 요금 지불

제17조 직접 판매

제18조 요금 책정

제19조 다수설비의 전력요금

제20조 요금 체감

제21조 요금 산정의 시작 및 기간

제22조 요금 상계

제 2 절 특수 요금 규정

제23조 수 력

제24조 매립가스

제25조 하수처리가스

제26조 갯내가스

제27조 바이오매스

제28조 지 열

제29조 풍력에너지

제30조 풍력에너지 리파워링

제31조 해양풍력에너지

제32조 태양복사에너지

제33조 건물 표면 또는 건물 위의 태양복사에너지

제 4 장 균등 조정 메커니즘

제 1 절 전국적 균등 조정

제34조 송전망운영자에게 전달

제35조 송전망운영자의 요금 결제

제36조 송전망운영자 간 균등 조정

제37조 공급업체로의 전달

제38조 추후 수정

제39조 일부불입

제 2 절 전력다소비기업 및 철도운영자를 위한 특수 균등 조정 규정

제40조 기본요율

제41조 제조기업

제42조 철도운영자

제43조 신청기한 및 결정의 효력

제44조 정보제공의무

제 5 장 투명성

제 1 절 통지 및 공지의무

제45조 기본요율

제46조 설비운영자

제47조 공급망운영자

제48조 송전망운영자

제49조 전력공급업체

제50조 인증

제51조 연방통신청 통지

제52조 정보 공지

제 2 절 차 액

제53조 고 지

제54조 결 제

제 3 절 생산원증명서 및 이중판매 금지

제55조 생산원증명서

제56조 이중판매 금지

제 6 장 법적 보호 및 행정절차

제57조 청산기관

제58조 소비자보호

제59조 임시 법적 보호

제60조 해로 이용

제61조 연방통신청의 임무

제62조 범칙금 규정

제63조 전문 감독

제 7 장 규정권한, 중간보고, 경과규정

제64조 규정권한

제65조 중간보고

제66조 경과규정

첨 부

첨부 1 기술보너스

첨부 2 에너지작물 생산 전력을 위한 보너스

첨부 3 열병합보너스

첨부 4 열이용 보너스

첨부 5 기준수익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이 법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기후 및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에너지공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 외부 효과 등을 통한 국민경제의 에너지공급비용을 감축하고, 화석에너지원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은 전력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 30%로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독일 연방지역 내(법의 적용범위) 재생에너지와 갱내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일반 전력공급망에의 우선 연결
2. 공급망운영자를 통한 해당 전력의 우선적 구매, 송전, 배전, 결제
3. 구매 및 결제가 이루어진 전력에 대한 전국적 균등 조정

제 3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비(Anlage)”라 함은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위한 모든 시설을 뜻한다.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에는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을 받아 임시로 저장한 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2. “설비운영자(Anlagenbetreiberin oder Anlagenbetreiber)”라 함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뜻한다.

3. “재생에너지(Erneuerbare Energien)”라 함은 파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염분 농도차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해류에너지를 포함한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지열,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하수처리가스를 포함한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생분해가 가능한 가정 및 산업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뜻한다.
4. “발전기(Generator)”라 함은 기계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열에 의한 에너지, 전자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든 기술시설을 뜻한다.
5. “운전 개시(Inbetriebnahme)”라 함은, 발전기가 재생에너지, 갱내가스 또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가동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완비된 설비가 처음으로 가동됨을 뜻한다.
6. “설비의 발전용량(Leistung einer Anlage)”이라 함은 설비가 시간 제약 없이 규정에 따라 운영될 경우, 작은 편차는 무시하고, 기술적으로 이를 수 있는 유효 발전용량을 뜻한다.
7. “공급망(Netz)”이라 함은 일반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의 구매, 송전, 배전을 담당하는 기술시설들이 상호 연계된 총체를 뜻한다.
8. “공급망운영자(Netzbetreiber)”라 함은 일반 전력공급을 위한 모든 전압의 공급망을 운영하는 이들을 뜻한다.
9. “해양설비(Offshore-Anlage)”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해양 방향으로 최소 3노트 떨어진 곳에 설치된 풍력에너지설비를 뜻한다. 여기에서 해안선에는 연방 해·수역관리청에서 발행한 지도 제2920호에 1:375,000의 축척으로 표시된 독일 북해연안과 인근 수역(1994, XII), 그리고 지도 제2921호에 표시된 독일 발트해연안과 인근 수역(1994, XII)¹⁾이 해당된다.
10. “열병합발전에 의한 전력(Strom aus Kraft-Wärme-Kopplung)”이라 함은 마지막으로 2006년 10월 31일자 규정(BGBI. I S. 2407) 제170

1) 연방해·수역관리청, 20359 함부르크.

조로 개정된 2002년 3월 19일자 열병합발전법 (BGBI. I S. 1092) 제3조 제4항에 의거하는 전력으로서 열병합발전법 제5조에 의거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것을 뜻한다.

11. “송전망운영자(Übertragungsnetzbetreiber)”라 함은 고압 및 최고압 공급망을 관할하는 자로서 하위 공급망으로 전력을 초지역적으로 송전하는 자를 뜻한다.

12. “환경감정사(Umweltgutachterin oder Umweltgutachter)”라 함은 2008년 3월 17일자 법(BGBI. I S. 399) 제11조로 개정된 2002년 9월 4일자 고지(BGBI. I S. 3490) 형태의 환경감사법에 따라 발전부문에서 환경감정사 또는 환경감정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한다.

제 4 조 법적 채무관계

(1) 공급망운영자는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이 법의 의무 이행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2) 제8조 제3항과 관계없이 설비운영자와 공급망운영자의 부담으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연결, 구매, 송전, 배전

1

제 5 조 연 결

(1) 공급망운영자는 재생에너지와 갱내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급망의 특정 지점에 연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연결지점은 다른 공급망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연결지점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전압이 맞고 설비의 입지까지 최단거리인 지점이어야 한다. 발전용량이 최대 30kW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설비가 이미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 지대에 위치한 경우, 이 지대가 공급망과 연결된 지점이 가장 유리한 연결지점으로 간주된다.

(2) 설비운영자는 이 공급망의 다른 연결지점이나 전압이 맞는 다른 공급망의 연결지점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3) 제1항과 제2항과는 달리, 공급망운영자는 설비에 다른 연결지점을 지정해줄 권한이 있다. 이는 해당 설비로부터의 전력 구매가 제 8조 제1항에 따라 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급망에 연결할 의무는 전력 구매가 제9조에 의거하는 공급망의 최적화, 강화 또는 확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연결지점 결정과 제9조에 의거하는 공급망운영자의 계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측과 공급망운영자는 요구에 따라 8주 내에 특히 공급망 호환성 검사에 필요한 공급망 관련 자료를 비롯한 필요 자료를 상호 제시해야 한다.

제 6 조 기술 및 운영상의 요건

설비운영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발전용량이 100kW 이상인 설비에 대하여

a) 공급망 과부하가 일어나는 경우, 원격으로 공급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및 운영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시설은 공급망운영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b) 실시간 흘러들어가는 공급량을 알 수 있는 기술 및 운영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시설은 공급망운영자도 이용가능하다.

2. 풍력에너지설비가 공급망과의 연결지점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설비와 공동으로 규정 제64조 제1항 제1문 제1호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연결의 설치 및 사용

(1) 설비운영자는 설비의 연결과 측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측정을 공급망운영자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연결의 설치 및 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나머지 시설들은 공급망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과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 18일자 법(BGBI. I S. 2966) 제2조로 개정된 2005년 7월 7일자 에너지산업법(BGBI. I S. 1970, 3621) 제49조를 준수해야 한다.

(3)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한 전력 공급의 경우, 설비운영자에게 유리하도록 2006년 11월 1일자 저압연결규정(BGBI. I S. 2477) 제18조 제2항이 준용된다.

제 8 조 구매, 송전, 배전

(1) 제11조를 조건으로 하여, 공급망운영자는 재생에너지와 갱내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 가운데 구매가능한 모든 전력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송전하고 배전할 의무가 있다.

(2) 설비가 설비운영자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거나 제3조 제8호의 공급망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고, 전력이 상

업적, 회계 상의 목적으로 해당 공급망을 통해 제3조 7호에 따른 공급망으로 전해지는 경우에도 제1항의 의무는 적용된다.

(3) 제12조와 관계없이, 설비운영자와 공급망운영자가 설비가 공급망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우선구매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계약에 의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아래 각호는 송전망운영자가 아닌 공급망운영자에 대해 우선적 구매, 송전, 배전의 의무를 갖는다.

1. 상위 송전망운영자
2. 판매권한이 있는 공급망운영자의 공급망지역 내에 다른 국내 송전망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국내 송전망관리자
3.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밖의 모든 공급망운영자

2

제 9 조 공급망의 용량 확장

(1) 공급망운영자는 공급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요구가 있을 시 재생 에너지나 갠가스 등을 이용한 전력의 구매, 송전, 배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기술현황을 고려하여 공급망을 최적화, 강화, 확장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해당 설비를 대상으로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통제가능성이 있을 경우, 설비운영자에게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하며, 이때, 통제의 예상시점, 규모, 기간을 알려줘야 한다. 공급망운영자는 제2문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며, 이때 해당 공급망지역과 요인을 밝혀야 한다.

(2) 상기 의무는 공급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시설과 공급망운영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가 될 연결시설에도 적용된다.

(3) 공급망의 최적화, 강화, 확장이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공급망운영자는 상기 의무를 갖지 않는다.

(4) 열병합발전법 제4조 제6항의 의무 그리고 에너지산업법 제12조 제3항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손해배상

(1) 공급망운영자가 제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급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급망운영자가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급망운영자가 제9조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설비운영자는 공급망운영자로부터 공급망운영자가 공급망의 최적화, 강화, 확장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한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망운영자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공급 매니지먼트

(1) 공급망운영자는 제9조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공급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열병합, 갱내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용량 100 kW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 아래 각호의 경우, 통제를 가할 수 있다.

1.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망지역의 공급망 용량이 해당 설비의 전력으로 인해 초과되고,
2.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량을 구매하고 있음을 보장하고,
3. 해당 공급망 지역에서 현재 흘러들어오는 전력량 데이터를 불러낸 경우

제1문에 따른 설비의 통제는 제9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제1항의 조치가 전력공급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2005년 7월 7일자 에너지산업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갱내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운영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3) 공급망운영자는 요구가 있을 시 제1항에 해당되는 설비운영자에게 4주 내에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거자료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제3자 추가정보 없이 조치의 필요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제1항 제1문 제3호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제12조 사정변경 조항

(1) 제11조 제1항의 통제의 원인이 되는 공급망의 관리자는 제11조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설비운영자에게 합의한 금액에 맞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놓치게 된 요금과 열이용수익을 합한 값에서 절약된 비용을 제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2) 공급망운영자는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으며 공급망운영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1항의 비용을 공급망이용료에 추가로 책정할 수 있다. 공급망운영자는 공급망의 최적화, 강화, 확장의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급망운영자에 대한 설비운영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제13조 공급망 연결

(1)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제5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연결지점과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과 송전 및 구매 전력을 파

약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기기에 드는 비용은 설비운영자가 부담한다.

(2) 공급망운영자가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비 측에 다른 연결지점을 지정해주는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초과비용은 공급망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용량 확장

공급망의 최적화, 강화, 확장비용은 공급망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상의 합의

(1) 공급망운영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증된 금액만큼 공급망이용료에 추가로 책정할 수 있다.

(2) 상기 비용은 에너지산업법규정에 의거하는 규제기관의 효율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요 금

1

제16조 요금 지불

(1) 공급망운영자는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만을 사용하는 설비운영자에게 해당 전력에 대해 최소 제18조 내지 제33조에 의거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전력에 대한 요금지불의무는 제64조 제1항 제1문 제9호에 따른 설비등기부 설치 후 설비운영자가 설비등기부에 설비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2조와 제33조에 의거하는 설비의 전력에 대해서는 제1문과는 달리, 설비운영자가 설비의 입지와 발전용량을 연방통신청(Federal Network Agency)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요금지불의무가 적용되며, 제51조 제3항 제1문이 준용된다.

(3)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전력이 일시적으로 저장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설비운영자는 그 시점부터 아래의 경우,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력을 공급망에 공급하여 공급망운영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 a) 해당 전력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 b) 해당 전력을 설비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며,
- c) 해당 전력을 일반 공급망이 아닌 설비운영자의 공급망과 직접 연결된 제3자가 소비하지 않는 경우

(5) 전력을 직접 판매한 설비운영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3항의 의무가 해당 설비운영자가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6) 설비운영자는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직접 판매

(1) 설비운영자는 전월이 시작되기 전에 공급망운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해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역월(曆月) 기준으로 제3자에게 판매(직접판매)할 수 있다. 해당 역월 동안 설비에서 생산된 전체전력에 대해서는 제16조의 요금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을 직접 판매한 기간은 제21조 제2항의 요금결제기간으로 계산된다.

(2) 제1항 제2문과는 달리, 설비운영자는 아래 각호의 경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특정 퍼센티지를 역월 기준으로 직접 판매하고, 남은 전력에 대해서 제16조에 따라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공급망운영자에게 직접 판매 퍼센티지를 전월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하고

2. 해당 퍼센티지를 언제나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전력을 직접 판매한 설비운영자는 공급망운영자에게 전월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한 경우에 한해서 제16조에 따른 요금청구를 익월에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요금 책정

(1) 설비 발전용량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전력요금은 설비의 발전용량과 각각 적용되는 역치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2) 제23조 내지 제28조의 역치용량 귀속을 목적으로 할 때, 제1항의 발전용량은 제3조 제6항과는 달리, 역년 기준 제8조에 의거하여 구매한 kWh와 역년의 전체시간에서 해당 설비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한 시점 이전의 전체시간과 설비의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시점 이후의 전체시간을 제한 값이다.

(3) 요금에는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 다수설비의 전력요금

(1) 다수설비는 아래 각호의 경우,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동된 발전기의 요금 책정을 목적으로 할 때, 한 개의 설비로 간주된다,

1. 동일한 지대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2. 동종의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3. 생산된 전력에 대해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비 발전용량에 따른 요금이 책정되며,
4. 설비들이 연속 12 역월 이내에 운전이 개시된 경우

(2) 설비운영자는 동종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다수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공동의 측정기기로 결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1항을 조건으로 하여, 요금 책정 시 개별 설비의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3) 상이한 요금이 적용되는 다수의 풍력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공동의 측정기기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풍력에너지 설비의 전력량은 각각의 기준수익에 따라 계산된다.

제20조 요금 체감

(1) 제22조 내지 제33조에 의거하는 요금과 보너스는 제66조와는 상관없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이 개시된 설비에 대해 적용된다. 그 이후에 운전이 개시된 설비에 대해서는 제2항, 제2a항, 제3항에 따라 요금과 보너스가 매년 체감한다. 제2문에 따른 해당 역년에 산정되는 요금과 보너스는 제21조의 전체 요금기간에 적용된다.

(2) 매년 감소하는 요금과 보너스의 퍼센티지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발전용량이 5MW 이상인 수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제23조 제3항): 1.0%
2. 매립가스(제24조)로 생산되는 전력: 1.5%

3. 하수처리가스(제25조)로 생산되는 전력: 1.5%
4. 갱내가스(제26조)로 생산되는 전력: 1.5%
5. 바이오매스(제27조)로 생산되는 전력: 1.0%
6. 지열(제28조)로 생산되는 전력: 1.0%
7. 풍력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 중
 - a) 해양설비에서(제31조) 생산되는 전력 (2015년 이후): 5.0%
 - b) 그 밖의 설비에서(제29조)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1.0%
8. 태양복사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 a) 제32조에 따른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 aa) 2010년: 10.0%
 - bb) 2011년 이후: 9.0%
 - b) 제33조에 따른 설비 중
 - aa) 발전용량 최대 100 kW인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 aaa) 2010년: 8.0%
 - bbb) 2011년부터: 9.0%
 - bb) 발전용량이 100 kW를 초과하는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 aaa) 2010년: 10.0%
 - bbb) 2011년 이후: 9.0%
- (2a) 제2항 제8호에 따른 퍼센티지는
 - a) 전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이내에 제16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통신청에 등록된 설비의 발전용량이 아래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1.0% 인상한다.
 - aa) 2009년: 1500MW
 - bb) 2010년: 1700MW
 - cc) 2011년: 1900MW
 - b) 제16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전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앞선 12개월 내에 방통신청에 등록된 설비의 발전용량이 아래의 용

량에 미달되는 경우, 1.0% 인하한다.

aa) 2009년: 1000MW

bb) 2010년: 1100MW

cc) 2011년: 1200MW

연방통신청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와 연방경제기술부와의 합의 하에 제2항 제8호와의 연계 하에 제1문에 따라 익년에 적용되는 퍼센티지와 이에 따른 요율을 10월 31일 연방관보에 공지한다.

(3) 연간 요금과 보너스는 제1항과 제2항의 계산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된다.

제21조 요금 산정의 시작 및 기간

(1) 요금은 발전기가 재생에너지나 갱내에너지만을 이용해 처음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급망에 공급한 시점부터 또는 전력이 처음으로 제33조 제2항에 따라 소비된 시점부터 산정된다.

(2) 요금은 각각 20년 동안 (운전 개시년도 가산) 지불되어야 한다. 제1문과는 달리, 제23조 제3항의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요금은 15년 동안 (가동년도 가산) 지불되어야 한다. 제1문이나 제2문의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발전기가 운전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재생에너지, 갱내에너지, 또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가동되는지와는 무관하다.

(3) 이어지는 규정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전기나 다른 기술적, 구조적 부분의 교체로 인해 제2항 제1문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제22조 요금 상계

(1) 공급망운영자의 요구에 의한 제16조에 따른 설비운영자의 요금 청구의 상계는 요구가 논란의 여지가 없거나 법률상으로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2) 본 법에 의해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압연결규정 제23조 제 3항의 상계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23조 수 력

(1) 발전용량이 최대 5MW인 수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50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12.67 센트
2. 최대 2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8.65 센트
3. 최대 5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7.65 센트

(2) 발전용량이 최대 5MW이며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현대화된 수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50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11.67 센트
2. 최대 5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8.65 센트

제1문에 따른 요금 청구는 20년 동안 (현대화가 완결된 해 가산) 적용된다.

(3) 발전용량이 5MW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50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7.29 센트
2. 최대 10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6.32 센트
3. 최대 20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5.8 센트
4. 최대 50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4.34 센트
5. 50MW를 초과하는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3.5 센트

(4) 발전용량이 5MW를 초과하고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현대화되었으며, 현대화 이후 발

전용량이 증가한 수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경우, 발전용량 증가에 해당되는 전력에 대해서도 제2항 제2문과 제3항이 준용된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비가 최대 5MW의 발전용량을 기록했다면, 이 발전용량에 해당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아래 각호에 한해서 적용된다.

1. 제16조 제3항과는 상관없이 전력이 저장발전소를 통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2. 설비의 설치 또는 현대화 이후 생태학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루거나 생태학적 상태가 이전상태보다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생태학적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것은
 - a) 저장용량 관리
 - b) 생물학적 통과성
 - c) 최소배수량
 - d) 고체관리
 - e) 강변구조

가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천수지대를 설치했거나 지류를 연결시킨 경우로서, 해당 조치들은 경영목표를 준수하면서 양호한 생태학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아래 각호는 제2문과의 연계 하에 제1문 제2호의 근거로 적용된다.

1. 제1항과 제3항의 설비에 대해서는 수력 이용 인가서 제시
2. 제2항과 제4항의 설비에 대해서는 관할 수리청이나 환경감정사의 확인서 제시

현대화로 인해 수력 이용에 대해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새 인가서가 근거로 적용된다.

(6) 제1항과 제3항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 설비가 이미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거나 수력발전

이 아닌 다른 목적을 우선으로 새롭게 구축될 제방이나 댐과의 공간적 연계 하에 설치된 경우 또는

2. 댐 등의 시설 없이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24조 매립가스

(1) 매립가스를 이용해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50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9.0 센트

2. 최대 5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6.16 센트

(2) 가스공급망으로부터 빼낸 가스는 가스량이 역년말 기준으로 열당량에 있어서 법의 적용 범위 내의 다른 곳에서 가스공급망으로 공급되는 매립가스량에 상응하는 경우, 매립가스로 간주된다.

(3) 제1항의 요금은 첨부 1의 혁신적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인상된다. (기술 보너스).

제25조 하수처리가스

(1) 하수처리가스를 이용해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50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7.11 센트

2. 최대 5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6.16 센트

(2) 가스공급망으로부터 빼낸 가스는 가스량이 역년말 기준으로 열당량에 있어서 법의 적용 범위 내의 다른 곳에서 가스공급망으로 공급되는 하수처리가스량에 상응하는 경우, 하수처리가스로 간주된다.

(3) 제1항의 요금은 첨부 1의 혁신적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인상된다. (기술 보너스).

제26조 갱내가스

(1) 갱내가스를 이용해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1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7.16 센트

2. 최대 5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5.16 센트

3. 5MW를 초과하는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4.16 센트

(2)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광산에서 나온 갱내가스의 경우에만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제1항의 요금은 첨부 1의 혁신적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인상된다. (기술 보너스).

제27조 바이오매스

(1) 제64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라 만들어진 바이오매스규정에 의거하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15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11.67 센트

2. 최대 500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9.18 센트

3. 최대 5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8.25 센트

4. 최대 20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7.79 센트

지방산메틸에스터는 연소시작, 점화, 지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바이오매스로 간주된다.

(2) 가스공급망으로부터 빼낸 가스는 가스량이 역년말 기준으로 열당량에 있어서 법의 적용 범위 내의 다른 곳에서 가스공급망으로 공급되는 바이오가스량에 상응하는 경우, 바이오가스로 간주된다.

(3) 아래 각호의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5MW를 초과하는 발전용량을 가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첨부 3에 따라 열병합발전에 의해 생산된 경우에만

2. 제64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라 만들어진 바이오매스규정에 의거하는 바이오매스 외에 다른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설비운영자가 이용물질의 종류, 양, 단위, 원천, 단위당 저발열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이용물질 기록부를 통해서 어떤 바이오매스가 이용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3.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망으로부터 빼낸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첨부 3에 따라 열병합발전에 의해 생산된 경우에만

(4) 제1항의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의 경우 각각 kWh 당 3.0 센트 인상된다.

1. 첨부 1의 혁신적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기술보너스).
2. 첨부 2의 에너지작물이나 거름으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에너지작물보너스)
3. 첨부 3의 열병합으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열병합보너스)

(5) 2002년 7월 24일자 청정대기를 위한 기술지침(GMBI S. 511)의 배출량최소화규정에 따른 배출량포름알데히드 한계치가 준수되고 그 사실이 관할관청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연방 공해방지법에 의해 인가가 요구되고 혐기성 발효를 통해 얻은 가스(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금이 각각 kWh 당 1.0 센트씩 인상된다. 이는 제2항의 가스공급망으로부터 빼낸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8조 지 열

(1) 지열을 이용해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10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16.0 센트
2. 10 MW를 초과하는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10.5 센트

(1a)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전력 요금이 각각 kWh 당 4.0 센트 인상된다.

(2) 첨부 4의 열이용과 결합해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요금은 kWh 당 3.0 센트 인상된다. (열이용 보너스)

(3) HDR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제1항 제1문의 요금은 kWh 당 4.0 센트 인상된다.

제29조 풍력에너지

(1) 풍력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kWh 당 5.02 센트(기본 요금)이다.

(2) 제1항과는 달리, 설비 운전 개시부터 5년 동안은 요금이 kWh 당 9.2 센트이다 (초기요금). 이 기간은 설비 수익이 기준수익의 150%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 0.75% 당 2개월씩 연장된다. 기준수익은 첨부 5의 기준설비에 대해 산정한 수익을 말한다. 설비가 운전을 개시한 시점부터 제64조 제1항 제1문 제1호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기요금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풍력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kWh 당 0.5 센트 인상된다. (시스템서비스 보너스).

(3) 제16조 제1항과 제3항과는 달리, 발전용량이 50 kW를 초과하며 설비운영자가 운전 개시 이전에 공급망운영자에게 해당 설비에서 기준수익의 최소 6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공급망운영자는 해당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4) 제3항의 입증을 위해서는 공급망운영자와 합의 하에 신청한 첨부 5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감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공급망운영자가 설비운영자의 요구가 있는 지 4주가 지나기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제57조의 정보처리기관이 풍력에너지촉진협회(FGW)와 상담 후 전문가를 지정한다. 감정 비용은 설비운영자와 공급망운영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30조 풍력에너지 리파워링(Repowering)

동일한 또는 인접하는 지역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존 설비를 궁극적으로 대체하는 풍력에너지설비(Repowering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가운데 아래 각호의 경우, 초기요금이 kWh 당 0.5 센트 씩 인상된다.

1. 설비를 대체하고 적어도 10년 후에 운전을 개시하고,
2. 대체된 설비에 비해 발전용량이 최소 2배, 최대 5배인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그밖에는 제29조가 준용되며, 제29조 제3항의 입증의무는 동일한 지역에서 이미 이에 상응하는 입증이 이루어진 설비를 대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1조 제2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1조 해양풍력에너지

(1) 해양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kWh 당 3.5 센트이다 (기본 요금).

(2) 설비의 운전 개시부터 12년 동안은 요금이 kWh 당 13.0 센트이다 (초기요금). 제1문의 초기요금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kWh 당 2.0 센트 인상된다. 제1문과 제2문의 초기요금의 기간은 최소 12노트 떨어진 곳에 최소 20미터 수심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 12노트를 기준으로 추가거리 1노트마다 0.5개월, 추가 수심 1미터마다 1.7개월씩 연장된다.

(3) 제1항과 제2항은 연방자연보호법 제32조 제2항과의 연계 하의 제57조 또는 주법에 의해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에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설치인가를 받은 해양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체적 의미가 큰 지역 또는 유럽조류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제1문이 적용된다.

제32조 태양복사에너지

(1) 태양복사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kWh 당 31.94 센트이다.

(2) 설비가 태양복사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아닌 다른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위에 설치되지 않은 한, 공급망운영자는 아래 각호의 경우,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1. 설비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21일자 법(BGBI. I S. 3316) 제1조로 개정된 2004년 9월 23일자 고지(BGBI. I S. 2414)에 나오는 건설법 제30조에 따른 건축설계도의 적용범위 내에서 설치된 경우 또는

2. 설비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법 제38조 제1문의 절차가 이루어진 곳에 설치된 경우

(3) 제2항의 건축설계도의 적용범위 내에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공급망운영자는 아래 각호의 경우,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건축설계도는 2003년 9월 1일 이후에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수정되었어야 한다.

1. 설비가 건축 설계도를 만들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봉인되었던 지대에 위치한 경우

2. 설비가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사용되다가 전환된 지대에 위치한 경우

3. 설비가 해당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설계도에 지정되어 있고 건축 설계도를 만들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동안 경작지로 사용되던 녹지대에 위치한 경우

제33조 건물 표면 또는 건물 위의 태양복사에너지

(1) 건물 표면이나 건물 위 또는 방음벽에 설치된 태양복사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 요금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최대 30 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43.01 센트

2. 최대 100 k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40.91 센트

3. 최대 1 MW의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39.58 센트

4. 1 MW를 초과하는 발전용량의 경우, kWh 당 33.0 센트

(2) 제1항 제1호의 최대 30 kW의 발전용량을 갖는 설비의 경우, 설비운영자나 제3자가 설비와 인접한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소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전력요금은 kWh 당 25.01 센트로 인하된다.

(3) 건물이라 함은 독자적으로 사용가능한 지붕이 덮인 건축시설로서 인간이 출입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동물이나 사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 4 장 균등 조정 메커니즘

1

제34조 송전망운영자에게 전달

공급망운영자는 제16조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 전력을 즉각적으로 상위 송전망운영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제35조 송전망운영자에 의한 요금 지불

(1) 상위 송전망운영자는 제16조에 따라 공급망운영자가 요금을 지불한 전력량에 대해 제18조 내지 제33조에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2) 마지막으로 2008년 4월 8일자 규정(BGBI. I S. 693) 제3a조로 개정된 2005년 7월 25일자 전력망이용료규정(BGBI. I S. 2225) 제1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공급망이용료는 요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8조 제4항 제2호는 준용된다.

제36조 송전망운영자 간 균등 조정

(1) 송전망운영자는 제16조에 따라 요금이 지불된 전력량의 상이한 양과 경과시간 그리고 요금을 조사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전력량을 상호 간에 일시적으로 균등 조정하고, 전력량과 요금을 제2항에 맞게 계산해야 한다.

(2) 송전망운영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8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전년도에 구매하고 제1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균등 조정한 전력량과 해당 송전망운영자 관할 지역의 전력공급업체들이 전년도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전체 전력량에서 해당 전력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야 한다.

(3) 이 평균비율보다 더 많은 전력량을 구매해야 했던 송전망운영자는 다른 송전망운영자에 대해 이들도 공급망운영자로부터 평균값에 상응하는 전력량을 구매할 때까지 제1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구매 및 요금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송전망운영자는 해당 전력을 하위 전력공급업체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공급업체로의 전달

(1)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업체는 제35조에 따라 송전망운영자가 구매하고 요금을 지불한 전력을 적시에 공시되고 제16조와 연계하여 제8조에 의거하는 실제구매에 근접한 값에 따라 구매하고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전력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전체전력량 가운데 최소 50%가 제23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전력인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구매해야하는 비율은 해당 전력공급업체의 공급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전력공급업체가 비교적 동일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비율은 제16조에 따라 요금이 지불된 전체전력량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전체전력량의 비율에 따라 책정된다.

(3) 제1항의 요금은 제16조에 따라 전체공급망운영자가 2사분기 전에 지불한 kW당 요금의 예상 평균치에서 제35조 제2항의 적용되지 않는 공급망이용료를 제한 값으로 책정된다.

(4) 송전망운영자는 제36조의 균등 조정으로 인해 생기는 제1항의 전력공급업체에 대한 청구의 유효기간을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해 8월 31일까지 두어야 한다. 실질적인 전력량과 요금의 균등 조정은 다음해 9월 30일까지 월분납으로 이루어진다.

(5)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전력은, 해당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 또는 이와 비슷한 전력으로 상품화될 경우, 제3항에 따라 지불된 요금으로 판매될 수 없다.

(6) 전력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는 전력공급업체와 동등하다.

제38조 추후 수정

제36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4항의 요금 결제이후에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판결로 인해 전력량이나 요금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해당 변화요소는 다음번 결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39조 일부불입

예상되는 균등 조정 요금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월분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2

제40조 기본요율

(1) 연방경제수출관리공단은 신청이 있을 시, 최종소비자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조 기업이거나 철도운영자인 경우, 한 구매지점에 대해 전력공급업체가 해당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37조에 따른 전력량의 비율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은 기업들의 전력비용을 낮추고 이로써 이들의 국제적 경쟁력과 복합운송 부문의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이로 인해 법의 목표가 위협받지 않고, 전체전력소비자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급 전력량 비율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당 구매지점에 대해 특정 퍼센티지가 책정된다. 퍼센티지는 제37조 제3항에 따른 다음해

에 예상되는 요금과 다음해에 예상되는 평균 전력비용의 차액과 퍼센티지에서 나온 값이 kWh 당 0.05 센트가 되도록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예상 평균전력비용에는 무엇보다 에너지거래소에서의 평균 전력구매비용이 해당된다.

제41조 제조기업

(1) 제조부문 기업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 대해 아래 각호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해진다.

1. 제37조 제1항의 전력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한 전력이 특정 구매지점에서 10GWh를 초과했는지 여부 및 정도
2. 연방통계청의 정의(전문시리즈 4, 4.3.번, 2007 비스바덴)²⁾에 따른 업체의 총가치창출에 대한 전력비용의 비율이 15%를 초과했는지 여부 및 정도
3. 제37조의 전력량이 업체에 공급되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되었는지 여부 및 정도
4.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소비 감축 잠재력을 확인하고 평가한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 및 정도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은 지난 회계연도의 전력공급계약서와 전력요금서 그리고 지난 회계연도의 연말결산을 토대로 한 회계감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제1항 제4호의 요건은 인증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2a)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새로 설립된 기업은 제1항과는 달리 단축회계연도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제2항은 준용된다. 개조되어 설립된 기업은 새로 설립된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시점은 처음으로 생산 또는 가동을 위해 전력이 구매된 시점으로 간주한다.

2) 연방통계청, 65180 비스바덴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력구매가 100GWh 이하이거나 총가치창출에 대한 전력비용의 비율이 20% 이하인 기업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에 해당 구매지점에서 구매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한 전력의 10%를 초과하는 값에 대해서만 제40조의 제한이 적용되며, 제2항에 따라 이를 입증해야 한다. 기업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여러 전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을 경우, 제40조 제2항의 제한은 전력공급업체가 해당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구매지점에서 공급한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 기업은 이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력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4) 구매지점이라 함은 산업지대에 입지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으로 연계된 모든 전력시설로서 공급망운영자의 공급망과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송출지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업의 독립적 부문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제42조 철도운영자

철도운영자에 대해서는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그리고 제2항, 제2a항, 제3항이 아래 각호에 따라 준용된다.

1. 철도교통 운행에 직접 소비되는 전력량만 고려한다.
2. 철도운영자는 소비량이 10GWh 이하인 기업을 뜻한다.
3. 구매지점은 기업의 철도교통 운영을 위한 소비지점의 총체를 말한다.

제43조 신청기간 및 결정의 효력

(1) 제41조 또는 제42조와의 연계하여 제40조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류 완비를 포함해서 각각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제척기간) 결정은 신청자, 전력공급업체, 송전망운영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은 다음해 1월 1일 발효되어 1년 동안 유효하다. 이전 결정에 의한 효력은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총가치창출에 대한 전력비용의 비율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다.

(2)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제41조 제2a항의 새로 설립된 기업은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문은 철도운영자에게도 준용된다.

(3) 제37조에 따른 해당 구매지점 관할 송전망운영자의 해당 전력공급업체에 대한 청구는 연방경제수출관리공단의 결정에 따라 제한되며, 송전망운영자는 제36조의 틀 내에서 이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제44조 정보제공의무

제40조의 결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이들은 요구가 있을 시 제40조 제1항 제2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보부와 그 위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운영 및 사업상의 기밀사항은 밝힐 필요가 없다.

제 5 장 투명성

1

제45조 기본요율

설비운영자, 공급망운영자, 전력공급업체는 특히 제46조 내지 제50조에 언급된 자료를 비롯한 제34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전국적 균등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8조는 준용된다. 제64조 제1항 제1문 제9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설비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되는 자료는 자료의 공개 시점부터 제45조 내지 제52조에 의거하여 전할 필요가 없다.

제46조 설비운영자

설비운영자는 공급망운영자에 대해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설비의 입지와 발전용량 그리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 제27조 제1항의 바이오매스설비의 경우, 제27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용물질과 제27조 제4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이용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3. 2월 28일까지 전년도 연말결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47조 공급망운영자

(1) 송전망운영자가 아닌 공급망운영자는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제46조에 따라 설비운영자에게 받은 정보, 실제로 지불한 요금, 그 밖의 전국적 균등 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각적으로 그 요약본을 상위 송전망운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2. 5월 31일까지 송전망운영자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통

해 개별 설비의 전년도 연말결산과 이를 합친 요약본을 전산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은 준용된다.

(2) 제1항에 따른 균등 조정해야 할 에너지양과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래 각호가 요구된다.

1. 설비가 연결된 전압에 관한 정보
2.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적용되지 않은 공급망이용료의 금액
3. 공급망운영자가 하위 공급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에너지양을 구매했는지에 관한 정보
4. 공급망운영자가 제3호의 에너지양을 어느 정도 최종소비자, 공급망운영자 또는 전력공급업체에 판매했거나 자체적으로 소비했는지에 관한 정보

제48조 송전망운영자

(1) 송전망운영자에게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송전망에 연결된 설비의 경우, 제47조 제1항의 정보와 연말결산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47조가 준용된다.

(2) 송전망운영자는 그밖에도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관할 전력공급업체에 실제로 지불된 요금을 토대로 구매하고 제37조 제3항의 요금을 적용시킬 전력량을 알게 되는 즉시 이를 알려줘야 하고,
2. 관할 전력공급업체에 7월 31일까지 전년도 연말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제2항은 준용된다.

제49조 전력공급업체

전력공급업체는 관할 송전망운영자에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양을 즉각적으로 전산으로 알려주고 5월 31일까지 전년도 연말결산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0조 인 증

공급망운영자와 전력공급업체는 제47조 제1항 제2호,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연말결산을 제출할 때 회계감사나 공인회계사에 의해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연방통신청 통지

(1) 공급망운영자는 제46조에 따라 설비운영자에게 얻은 정보, 제47조 제2항 제1호의 정보 그리고 제47조 제1항 제2호와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연말결산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각각의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전산 형태로 연방통신청에 제출해야 하며, 전력공급업체의 경우, 이는 제49조의 정보와 제54조 제1항의 차액을 계산한 경우, 추가되는 kWh 당 전력구매비용에 대해 준용된다.

(2)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 본 법규정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설비운영자는 5월 31일까지 연방통신청에 해당 전력량을 전산형태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3) 연방통신청이 서식을 준비한 경우, 공급망운영자, 전력공급업체, 설비운영자는 이 서식의 형태로 자료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전력구매비용을 제외한 제1항과 제2항의 자료는 통계학적 목적과 본법의 평가 및 제65조에 따른 보고를 목적으로 연방통신청에 의해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와 연방경제기술부에 제공된다.

제52조 정보 공지

(1) 공급망운영자와 전력공급업체는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가지며 제48조 제1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제45조 내지 제49조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음해 말까지 삭제하지 않는다.
2. 제45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관한 확인보고서를 9월 30일 이후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음해 말까지 삭제하지 않는다.

(2) 정보와 보고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추가정보 없이 균등 조정된 에너지양과 요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제53조 고 지

(1)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업체는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각각의 산정기간에 예상되는 요금과 제3자에 대한 kWh 당 전력구매비용의 차액을 고지할 권한이 있다.

(2) 차액 신고 시 차액 계산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갱내가스를 통한 전력을 몇 kWh 이용했는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차액 계산은 추가정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공급망이용료에 추가 책정될 수 있는 비용은 차액으로 고지할 수 없다.

제54조 결 제

(1) 차액을 고지하는 모든 전력공급업체는 최종소비자에 대해 실제 전력구매비용을 기준으로 늦어도 다음해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차액을 결제해야 한다. 제53조 제2항은 준용된다.

(2)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요금 결제에는 제37조 제3항의 요금과 라이프치히 소재 유럽에너지거래소(European Energy Exchange AG)³⁾의 평균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때, 해당연도 2년 전 10월 1일부터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된다.

(3) 고객에게 예상 차액을 고지한 전력공급업체는 실제금액보다 더 높게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일은 전력공급업체가 부담한다.

3) 온라인으로 www.eex.com 에서 확인 가능

제55조 생산원증명서

(1) 설비운영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 환경감정사로부터 생산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생산원증명서는 아래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발전에 이용한 에너지의 종류와 주요 구성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 11월 20일자 이사회의 지침 2006/108/EG (ABl. EU Nr. L 363 S. 414)으로 개정된 전력내수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한 2001년 9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1/77/EG (ABl. EG Nr. L 283 S. 33)에 따르는 재생에너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보
2. 바이오매스 이용 시, 어느 정도 법규정 제64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서 의미하는 바이오매스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보
3. 설비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4.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량, 전력이 생산된 기간, 해당 전력이 어느 정도 제1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요금이 지불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5. 입지, 발전용량, 설비의 운전 개시 시점

(3) 생산원증명서는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빠짐없이 기입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

(4)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에 위치한 설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지침 2001/77/EG 제5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생산원증명서는 지침 제5조 제3항에 언급된 항목을 입증한다.

제56조 이중판매 금지

(1) 재생에너지와 갱내가스, 가스공급망으로 공급된 매립가스와 하수처리가스 그리고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가스를 이용해 만든 전력

은 여러 차례 판매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도되거나, 제34조나 제36조 제4항과 달리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없다.

(2)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법적 요금을 요구하는 설비운영자는 해당 전력에 대한 증명서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설비운영자가 재생에너지나 갱내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관한 증명서를 넘겨줄 경우, 이 전력에 대해서는 법적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2007년 8월 7일자 법 제3조 (BGBl. I S. 1788)로 개정된 2005년 9월 22일자 프로젝트-메커니즘법(BGBl. I S. 2826)에 따른 프로젝트 공동이행의 틀 내에서 설비의 배출 감축을 위한 배출권을 얻는 경우, 해당 설비의 전력은 제1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법적 보호 및 행정절차

제57조 청산기관(clearing house)

이 법과 관련해서 논쟁과 응용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방환경자연 보호원자력안전부는 정보처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 소비자 보호

제16조 내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경쟁법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 임시 법적 보호

(1) 설비운영자의 신청 하에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은 설비 설치 이전에 이미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제5조, 제8조, 제9조, 제16조의 요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설비를 일시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공급망을 즉각적으로 최적화, 강화, 확장해야 하며,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대해 저렴하고 공정하게 책정된 금액을 분할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임시규정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2) 임시규정은 민사소송규정 제935조, 제940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제60조 해로의 이용

설비운영자가 제16조의 요금에 대한 요구를 적용하는 한, 설비운영자는 설비 가동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1조 연방통신청의 임무

(1) 연방통신청은 아래 각호를 감시할 임무가 있다.

1. 전력공급업체에게 제35조에 따라 계산된 요금에서 적용되지 않은 공급망이용료를 제한 값만이 계산되는지 여부

2. 제51조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고 제52조에 따라 공개되는지 여부
3. 제3자에게 제53조와 제54조에 의거해서만 차액이 고지되는지 여부
연방통신청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의 법 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2) 제1항의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제69조 제1항 제2문, 제10항, 제91조, 제92조, 제95조 내지 제101조 그리고 제6절을 제외한 에너지산업법 제8부 규정들이 준용된다.

(3) 제2항에 따른 연방통신청의 결정은 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에너지산업법 제59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 제2항, 제3항, 제60조는 준용된다.

(4) 연방통신청은 에너지경제제법 제65조와 연계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 비용(수수료 및 경비)을 청구한다. 연방경제기술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62조 범칙금 규정

(1)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인해 아래 각호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위배된다.

1.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게 전력이나 가스를 여러 차례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제34조나 제36조에 반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에너지산업법 제65조 제1항이나 제2항, 제60조 제7항 제1문 또는 제8항 제1문과의 연계 하여 64조 제2항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규정 위반은 최대 10만 유로의 범칙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규정위반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관청은 연방통신청이다.

제63조 전문 감독

연방기관이 본법의 임무를 이행하는 동안, 이들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의 전문 감독을 받는다. 연방통신청에 대한 전문 감독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7 장 규정권한, 중간보고, 경과규정

제64조 규정권한

(1) 연방정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정으로 아래 각호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제6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4문,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풍력에너지설비의 공급망통합 개선 및 연료 관련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시스템서비스 보너스). 제1문의 규정은 경제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a) 제29조 제2항 제4문의 설비에 대해:

- 오류 시 설비측 조치 관련 요건
- 전압안정도 및 무효전력 준비 관련 요건
- 주파수 안정도 관련 요건
- 입증절차 관련 요건
- 공급 복구 관련 요건
- 기존 풍력발전소 확장 관련 요건

b) 제66조 제1항 제6호의 설비에 대해:

- 오류 시 설비측 조치 관련 요건
- 주파수 안정도 관련 요건
- 입증절차 관련 요건
- 공급 복구 관련 요건
- 기존 풍력발전소의 시설 개선 관련 요건

2. 제27조의 적용범위에서 어떤 물질이 바이오매스로 간주되는지, 어떤 기술절차가 전력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어떤 환경 관련 요건이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다.

3. 가스망 사용을 위한 기술적, 법적 요건, 가스공급망에서 사용하는 가스 중 매립가스, 하수처리가스, 바이오가스의 인정을 비롯한

첨단 혁신 기술만이 기술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첨부 3에 추가적으로 기술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과 기술 및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공정과 기술을 규정할 수 있다.

4. 첨부 3과 첨부 4에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열이용과 허용되지 않는 열이용을 규정할 수 있다.
5. 첨부 5의 정의에 추가적으로, 기준수익의 책정과 이용을 위한 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
6.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의 통합 개선과 관련해서는
 - a)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속화, 수요에 따른 공급, 공급망 및 시장통합의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그 자격요건, 형태,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 b) 에너지거래소 참여를 위한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7. 제45조 내지 제52조의 요구에 추가적으로, 전국적 균등 조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준비와 관련해서 규정할 수 있다.
8. 기술안전과 시스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 관련 기술적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9. 투명성 제고와 전국적 균등 조정 메커니즘의 간소화를 위해
 - a) 설비를 등록해야 하는 공식장부 설치 (설비등록부),
 - b) 설비등록부의 형식, 전달해야 할 정보,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
 - c) 자료보호를 위한 규정, 수수료 징수, 수수료가 부과되는 직무상 행위와 수수료율을 규정할 수 있다.

제1문 제2호, 제5호, 제6호는 독일 연방하원의 동의를 요구된다.

(2)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는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와와의 합의와 독일연방하원의 동의하에 그리고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정으로 아래 각호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전력 요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입증된 경우만 청구할 수 있다.
 - a) 이용된 바이오매스의 경작 시 농업 및 임업 지대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자연생활권의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 b) 이용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에서 특정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
 a), b)의 요건과 b)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조사 규정 및 필요 입증자료도 포함된다.
2. 첨부 2에 추가적으로, 에너지작물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않는 물질, 단순히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물로 간주되는 물질과 해당 물질의 표준 바이오가스수익
 - (3) 연방정부는 독일연방하원의 동의하에 그리고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아래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국적 균등 조정 메커니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송전망운영자는 제36조 제4항에 따른 전력을 하위 전력공급업체에게 보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
 2. 송전망운영자는 물질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의무를 갖는다.
 3. 송전망운영자는 특히 판매수익, 필요 거래비용, 요금지불 계산을 위해 공동으로 투명한 EEG 계좌를 소지할 수 있다.
 4.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업체는 제37조 제1항 제1문의 전력을 구매하고 요금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5. 송전망운영자는 익년에 재생에너지 및 갱내가스에서 생산되는 예상 전력량과 익년의 예상 비용과 수익 그리고 익년의 EEG 계좌의 잔고를 기준으로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EEG 분담금을 책정하고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6. 최종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업체는 해당 EEG 분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분할불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송전망운영자의 임무를 제3자에게 양도 관련 절차를 규정하며, 여기에는 송전망운영자가 전국적 균등 조정의 틀 내에서 행한 업무나 EEG 전력량 공고, 요금지불 및 거래비용을 재정지원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판매 규정, 판매 감시, 판매 관련 요건, 공개 및 투명성의무를 포함한 계좌 관리 및 EEG 분담금 책정,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와, 연방경제기술부와와의 합의 하의 연방통신청의 결정권한을 포함한 재정조정을 위한 기한과 경과규정 등이 속한다.
8. 직접 판매 규정과의 조율, 전력다소비기업과 철도운영자를 위한 특수 조정규정, 추후 수정 관련 규정, 연방통신청의 권한, 정보제공 및 공개의무, 균등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차액규정의 조율

제65조 중간보고

연방정부는 본 법을 평가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후 4년 마다 독일연방하원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6조 경과규정

(1)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제6조 내지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과 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과 제2항, 제30조, 제32조, 제33조 그리고 첨부 1과 첨부 3 대신에 2004년 7월 21일자 재생에너지법규정(BGBI. I S. 1918)이 2008년 12월 31일자 형식으로 적용되며, 이 때 아래 각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1. 제6조 제1호의 기술 및 운영상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준수되어야 한다.
2. 바이오매스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이 적용된다. 첨부 2의 틀 내에서는

a) I 제2호와 I 제4호

b) IV 제8호

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 13일 법(BGBI. I S. 2897) 제7조로 개정된 화주전매법 제25조 (연방법령관보 제3부 제612-7호에 공개된 형식)에 따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증류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주로서, 화주전매법 제25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3항 제3호에 따른 다른 사용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2008년 12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첨부 3에 따른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바이오매스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이 kWh 당 3.0 센트 인상된다(열병합 보너스).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호 그리고 제3항은 준용된다. 첨부 3에 따른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그 밖의 다른 바이오매스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이 최대 500 kW까지 kWh 당 3.0 센트 인상된다.

4. 제64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요금 청구는 바이오매스 규정에 따른 바이오매스 외에도 다른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는 설비운영자가 각각의 이용물질의 종류, 양, 단위, 원천, 단위당 저발열량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가 기록된 이용물질기록부를 통해 어떤 바이오매스가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a.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발효를 통해 얻은 가스(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이 최대 500 kW까지 kWh 당 1.0 센트 인상되지만, 이는 청정대기를 위한 기술지침의 배출량최소화규정에 상응하는 포름알데히드 한계치가 준수되고 그 사실이 관할관청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이는 제27조 제2항의 가스공급망에서 빼낸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발전용량이 20 MW를 초과하며

- a) 적어도 저발열량의 75%를 흑액으로 이용하는 설비
- b) 열병합발전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열병합발전에 의한 발전 비율이 적어도 70%에 달하는 설비
- c) 완전가동시간이 1년에 적어도 5,000 시간인 설비
- d) 2004년 8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설비

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섬유소를 생산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흑액이 생김) 이용된 전력의 차액에 대해서 20 MW 초과량부터 최소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요금은 kWh 당 7.0 센트이다.

제1문의 요금 외에는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은 배제된다. 설비에 대한 기존의 할당결정은 앞으로 효력이 중지된다. 공급망운영자에게는 매년 환경감정사의 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제1문 a) 내지 c)의 요건과 요금 지불이 이루어질 전력량을 입증해야 한다.

제1문 b)의 입증은 공인 기술지침을 따라야 하며, 독일지역난방협회 (AGFW)가 발행한 워크시트 FW 308 (열병합발전설비의 인증- 열병합발전 결정)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술지침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6. 2001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풍력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요금은 5년 동안 kWh 당 0.7 센트 인상되지만 (시스템서비스 보너스), 이는 2011년 1월 1일 이전의 시설 개선 이후 제64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규정의 요건을 처음으로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1a)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모듈 설비의 틀 내에서 운영된 설비는 제19조 제1항과는 달리, 개별설비로 간주된다. 모듈 설비는 아래 각 호로 구성된 여러 개의 설비를 말한다.

1. 여러 개의 발전기와
 2. 이 중 한 개의 발전기에는 에너지원시설, 특히 가스형태의 바이오매스 생산이나 액상 바이오매스 저장을 위한 에너지원 시설이 있어야 하며,
 3. 건축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2) 제64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법규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본법에서 본 법규정이 제시되는 한, 마지막으로 2005년 8월 9일 규정(BGBl. I S. 2419)으로 개정된 2001년 6월 21일자 바이오매스규정(BGBl. I S. 1234)이 적용된다.
- (3) 25% 이상이 독일연방공화국이나 연방주의 소유이며 2004년 8월 1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1 기술보너스

(출처: BGBl. I 2008, 2092)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는 기술보너스 혜택은 제18조에 따른 발전용량 최대 5 MW인 설비에서 아래와 같은 혁신적 절차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적용된다.

I. 가스처리

1. 자격요건 :

기술보너스 혜택은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급된 가스가 천연가스품질이 되도록 처리되고 아래 사항이 준수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 a) 0.5% 처리 시 최대 메탄배출량
- b) 생성가스 표준입방미터 당 0.5 kWh 처리 시 최대 전력소비
- c) 추가 화석에너지의 사용 없이 재생에너지, 갭내가스, 가스처리설비나 공급설비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하수처리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 처리하기 위한 열 준비
- d) 가스처리설비의 최대용량: 시간 당 700 표준입방미터 가스처리

2. 보너스 금액

기술보너스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 a) 가스처리설비의 최대용량이 시간 당 350 표준입방미터: kWh 당 2.0 센트
- b) 가스처리설비의 최대용량이 시간 당 700 표준입방미터: kWh 당 1.0 센트

가스처리설비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이 준용된다.

II. 혁신적 설비기술

1. 자격조건:

기술보너스 혜택은 아래 설비, 기술, 공정 가운데 한 개를 통해 생산되고 이 과정에서 첨부 3에 따른 열이용이 이루어지거나 최소 45%의 전기효율을 이루는 전력에 대해 적용된다.

- a) 열화학적 기화에 의한 바이오매스의 전환
- b) 연료전지
- c) 가스터빈
- d) 증기기관
- e) 유기 랭킨 사이클
- f) 다연료설비, 특히 칼리나 사이클
- g) 스텔링 엔진
- h) 짚을 비롯한 작물줄기 바이오매스만을 이용한 열화학 전환기술
- I) 바이오폐기물만을 발효시키고 추가부패된 발효잔류물이 물질로 처분될 경우, 고체 발효잔류물의 추가부패를 위한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비

2. 보너스 금액

기술보너스 금액은 kWh 당 2.0 센트이다.

첨부 2 에너지작물에서 생산된 전력을 위한 보너스

(출처: BGBl. I 2008, 2093-2095)

I. 자격요건

1. 제2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에너지작물에서 생산된 전력을 위한 보너스 혜택은 아래 경우에 적용된다.
 - a) 전력이 에너지작물에서만 생산되거나, 에너지작물이나 거름(바이오가스)의 혐기성 발효의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V에 따른 순수 식물에 기반을 둔 부산물과의 결합으로 생산된 경우
 - b) 설비운영자가 이용물질의 종류, 양, 단위, 원천에 관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이용물질 기록부에 기록함으로써 다른 물질이 이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 c) 같은 지대에 a)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설비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발전용량이 150 kW를 초과하는 설비의 경우, 기체상태 또는 고체의 바이오매스만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에만 보너스 혜택을 받는다. 액체 상태의 바이오매스를 필요한 점화 및 보조연소에 사용하는 것은 보너스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보너스 혜택은 오로지 에너지작물이나 거름(바이오가스)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에너지작물이나 거름(바이오가스)의 혐기성 발효와 이들 이용물질이 포지티브 리스트 V에 따른 순수 식물에 기반을 둔 부산물과 결합되는 경우, 제1문의 전력은 표준바이오가스수익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은 환경감정사의 확인서 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연방공해방지법에 따라 인가가 필요하고, 에너지작물이나 거름의 혐기성 발효로 얻은 가스(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 발효잔류물저장소가 가스

가 새지 않게 닫혀 있고, 오작동 또는 과잉생산을 대비한 추가적 가스소비시설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II. 정 의

제2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 에너지작물이라 함은 농업, 임업, 원예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나 조경관리의 틀 내에서 생겨나고 수확, 보존 또는 바이오매스설비에서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식물이나 식물 부위를 말한다.
2. 거름이라 함은 식용이 아닌 동물 부산물에 관한 위생규정(ABl. EG Nr. L 273 S. 1)이 포함된 2002년 10월 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G) 제1774/2002호 (2006년 12월 22일자 위원회의 규정(EG) 제2007/2006(ABl. EU Nr. L 379 S. 98)으로 개정)에서 정의하는 거름에 해당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III. 포지티브 리스트

I 제1호 a)에 따른 에너지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 각호(포지티브 리스트)와 같다.

1. 녹색 잎, 건식재료, 사일리지 형태의 전초를 비롯한 목초지와 초원에서 자란 식물
2. 녹색 잎, 건식재료, 사일리지 형태의 전초로서 수확된 곡물, 지방종자, 콩과 식물을 포함한 사료작물
3. 처리되지 않은 채소식물, 약용식물, 향료식물, 꽃꽂이용 꽃
4. 녹색 잎, 건식재료, 사일리지 형태의 곡식, 씨, 수분첨가옥수수, 구근, 사탕무, 일반 무, 과일, 야채, 감자줄기, 무잎, 짚
5. 평지씨기름, 해바라기씨기름 (각각 정제된 형태, 정제되지 않은 형태)
6. 종려기름, 콩기름 (정제된 형태, 정제되지 않은 형태), 단, 제64조

- 제2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7. 삼림의 간벌과 목재수확 시 나오는 폐목재, 나무껍질, 단벌기 관목류에서 나오는 목재
 8. 조경관리에서 나오는 식물 또는 식물 부위
 9. 유용동물 및 말의 짚자리를 포함한 배설물 그리고 농장에서 나오는 사료찌꺼기

Ⅳ. 네거티브 리스트

I 제1호 a)에 따른 에너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각호(네거티브 리스트)와 같다.

1. 불합격 야채, 불합격 감자, 불합격 약용 및 향료식물, 불합격 꽃
꽃이용 꽃
2. 손질한 곡물, 무 잘게 썬 것, 설탕 채취 시 사탕무의 얇은 조각
3. 손질한 야채, 감자껍질, 감자 찌꺼기, 보리 찌꺼기, 포도 찌꺼기, 기름 찌꺼기, 식물기름 제조에서 나오는 깻묵가루
4. 식물기름 처리에서 나오는 글리세린
5. 폐기물이 되는 식물기름
6. 종려기름과 콩기름, 단, 제64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7. 바이오에탄올
8. 바이오에탄올 제조 시 나오는 증류 찌꺼기
9. 톱밥과 대팻밥
10. 동물의 배설물과 임업, 조경관리 부문에서 나온 폐기물을 제외한 유기폐기물규정에 따른 유기폐기물
11. 말을 제외한 가축의 배설물

V. 순수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물과 해당 부산물의 표준 바이오가스수익의 포지티브리스트

순수 식물 기반 부산물	표준 바이오가스수익 신선한 물질 1톤 당 kWh
맥주 제조 시 생기는 보리 찌꺼기 (신선 또는 압착)	231
손질한 야채	100
야채 (불합격)	150
손질한 곡물	960
술 제조 시 나오는 곡물 찌꺼기 (밀)	68
곡물 분진	652
식물기름 처리에서 나오는 글리세린	1346
약용 및 향료식물 (불합격)	220
감자 (불합격)	350
감자 (으깬, 중간 정도의 전분 함유량)	251
전분 제조 시 나온 감자즙	43
전분 제조 시 나온 감자공정용수	11
전분 제조 시 나온 감자 찌꺼기	229
감자껍질	251
술 제조 시 나온 감자 찌꺼기	63
사탕무로 설탕 제조 시 나오는 당밀	629
과일 압착 때 생기는 찌꺼기(신선, 손질 무)	187
평지추출에서 나온 곡물가루	1038
평지기름을 짠 찌꺼기(남은 기름함유량: 약15%)	1160
꽃꽂이용 꽃 (불합격)	210

순수 식물 기반 부산물	표준 바이오가스수익 신선한 물질 1톤 당 kWh
설탕 제조 시 나오는 사탕무 깻묵	242
사탕무 부스러기	242

VI. 보너스 금액

1. 일반 보너스

- a) 제1호의 보너스는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aa)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발전용량이 최대 500 kW인 설비: kWh 당 6.0 센트
 - bb)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전용량이 최대 5 MW인 설비: 4.0 센트
- b) a)bb)와는 달리, I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 aa) 단벌기 관목류에서 나오는 목재나
 - bb) 조경관리의 틀 내에서 나오는 나무를 때워서 얻은 전력에 대해서는 보너스가 kWh 당 2.5센트이다.

2. 바이오가스에서 얻은 전력에 대한 보너스

- a) I의 보너스 금액은 제1호와는 달리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발전용량이 최대 500 kW인 설비에 대해서는 kWh 당 7.0 센트이다.
- b) a)의 보너스 금액은 II 제2호에 따른 거름 비율이 언제나 최소 30 질량퍼센트 인 경우에 한해서 아래의 경우 인상된다.
 - aa)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전용량이 최대 150 kW인 설비: kWh 당 4.0 센트
 - bb)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전용량이 최대 500 kW인 설비: kWh 당 1.0 센트

거름의 최소비율은 환경감정사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b)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망에서 빼낸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a)에 따른 보너스는 전력생산에 주로 조경관리의 틀 내에서 나오는 식물이나 식물부위가 이용되는 경우,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발전용량이 최대 500kW인 바이오가스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kWh 당 2.0센트 인상된다. 그 비율은 환경감정사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3. 제18조 내지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호와 제3항은 준용된다.

Ⅶ. 자격의 생성 및 소멸

1. 보너스 자격은 자격요건이 처음으로 충족되는 시점에 생성된다.
2.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부터 보너스 자격은 최종적으로 소멸된다. 이는 전력이 자체적으로 소비되거나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판매되는 기간에도 적용된다.

Ⅷ. 경과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제6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규정이 발효되기까지,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2월 5일 이전에 운전을 개시하거나 주문된 설비에 대해서는 III 제6호와 IV 제6호에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3 열병합보너스

(출처: BGBl. I 2008, 2096)

I. 자격요건

제27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열병합보너스 혜택은 제18조의 의미에 따른 발전용량 최대 20 MW에 대해서 아래 각호의 경우 적용된다.

1. 열병합발전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전력일 경우
2. 포지티브리스트 III에 따른 열이용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3. 열이용이 화석에너지원과 비슷한 에너지양으로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함을 입증하고 열공급으로 인한 초과비용이 1kW 당 최소 100 유로인 경우

II. 필요한 입증자료

1. I 제1호의 요건은 공급망운영자에게 공인 기술지침에 따라 입증해야 하며, 독일지역난방협회(AGFW)가 발행한 워크시트 FW 308 (열병합발전설비의 인증- 열병합발전 결정)에 따른 요건이 입증된 경우, 기술지침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입증자료는 매년 환경감정사의 확인서 제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시리즈별로 제조된 최대 발전용량 2 MW인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제1문의 입증 대신 열용량, 발전량, 전력계수가 명시되어 있는 제조업체의 자료를 제시해도 된다.
2. I 제2호, 제3호의 요건에 대한 입증은 열병합보너스가 적용되는 경우, 환경감정사의 확인서를 통해서 행할 수 있다.

III. 포지티브리스트

I 제2호에 따른 열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1년 당 그리고 가용면적 평방미터 당 최대 200 kWh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규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의 난방, 온수 공급 또는 냉방

2. 열공급과 열분배 및 열전달로 인한 손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용열수요의 25% 이하인 최소 400미터 길이의 공급망으로 열공급
3.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 23일자 법(BGBI. I S. 2470) 제3조로 개정된 1997년 3월 14일자 연방공해방지법(BGBI. I S. 504) 이행을 위한 네 번째 규정 첨부의 제2호 내지 제6호, 제7.2호 내지 제7.34호, 제10.1호 내지 제10.10호, 제10.20호 내지 제10.23호에 따른 공정열로의 이용 및 연료로의 이용을 위한 목재펠릿 제조
4. I제3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금사육용 건물의 난방
5. 동물우리의 난방, 상한치는 아래와 같다.
 - a) 가금 (살찌우는) 사료, 1마리 당 0.65 kWh
 - b) 암돼지 사육: 암돼지 1마리, 1년 당 150 kWh, 새끼돼지 1마리 당 7.5 kWh
 - c) 새끼돼지 사육: 새끼돼지 1마리 당 4.2 kWh
 - d) 돼지 (살찌우는) 사료: 돼지 1마리 당 4.3 kWh
6. I제3호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식물 재배 및 번식을 위한 유리시설의 난방
7. 비료제조를 목적으로 발효잔류물 처리를 위한 공정열로의 이용

IV. 네거티브 리스트

I 제2호와 I제3호에 따른 열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의 난방, 단, III제4호 내지 III제6호의 건물은 제외된다.
2. 전력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설비에서 나오는 폐기열 이용, 특히 유기 랭킨 사이클과 칼리나 사이클 공정에서의 이용
3. 이를테면 자체 열수요를 위해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설비에서 나온 열이용

첨부 4 열이용 보너스

(출처: BGBl. I 2008, 2097)

I. 자격요건

제28조 제2항에 따른 열이용 보너스 혜택은 아래 각호의 경우 적용된다.

1. 적어도 이용 가능한 열용량의 1/5이 열병합발전에 의한 경우
2. 열이용이 화석에너지원과 비슷한 에너지량으로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

II. 필요한 입증자료

I의 자격조요의 입증은 처음으로 보너스 혜택을 받게 될 때 환경감정사의 확인서를 통해서 행할 수 있다.

III. 포지티브 리스트

I에 따른 열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1년 당 그리고 가용면적 평방미터 당 최대 200 kWh의 열을 이용한 에너지절약규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의 난방, 온수 공급 또는 냉방
2. 열분배 및 열전달로 인한 손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용열수요의 25% 이하인 최소 400미터 길이의 공급망으로 열공급
3.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 23일자 법(BGBl. I S. 2470) 제3조로 개정된 연방공해방지법(BGBl. I S. 504) 이행을 위한 네 번째 규정 첨부의 제2호 내지 제6호, 제7.2호 내지 제7.34호, 제10.1호 내지 제10.10호, 제10.20호 내지 제10.23호에 따른 공정열로의 이용 및 연료로의 이용을 위한 목재펠릿 제조

IV. 네거티브 리스트

I에 따른 열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규정 제1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의 난방
2. 에너지로 이용되는 유기물에 의한 원료의 공급, 보존 및 잔류물 처리를 위한 열이용, 단, 연료로의 이용을 위한 목재펠릿 제조는 제외된다.
3. 포지티브리스트에 따른 입증 없이 열저장소 채우기

첨부 5 기준수익

(출처: BGBl. I 2008, 2098)

1. 기준설비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측정된 설비의 P-V 곡선에 따라 기준입지에서 기준수익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특정 모델의 풍력에너지설비이다.
2. 기준수익은 모든 허브높이와 모든 모델의 풍력에너지설비에 규정된 전력량으로서, 해당 모델이 기준입지에 설치되는 시점에 측정된 P-V 곡선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년간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다. 기준수익은 공인 기술지침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며, 기준수익을 책정하는 시점에 유효한 풍력에너지촉진협회(FGW)의 풍력에너지설비를 위한 기술지침 제5부에 나오는 절차, 근거, 계산방법이 이용되었을 경우, 기술지침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3. 풍력에너지 모델은 제조업체의 정보에 따른 모델명칭, 로터면적, 정격출력, 허브높이로 결정된다.
4. 기준입지는 지상 30미터 높이에서 초당 5.5 미터에 달하는 보통의 연간풍속, 대수를 사용한 높이, 0.1미터에 달하는 거칠기 길이의 레일리 분배로 결정되는 입지이다.
5. P-V 곡선은 모든 모델의 풍력에너지설비마다 조사한 풍속과 출력의 관계이며 허브높이는 상관없다. P-V 곡선은 공인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해야 하며, 기준수익을 책정하는 시점에 유효한 풍력에너지촉진협회(FGW)⁴⁾의 풍력에너지설비를 위한 기술지침 제2부에 나오는 절차, 근거, 계산방법이 이용되었을 경우, 기술지침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P-V 곡선이 비교 가능한 절차에 의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조사된 경우, 제2문에서 조사한 P-V 곡선 대신에 이 곡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본 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4) 풍력에너지촉진협회, 슈테레제만플라츠 4, 24103 킬

2001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곡선이 해당하는 모델의 설비가 새로 설치되는 일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계획된 입지의 설비가 기준수익의 최소 60%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제29조 제3항에 따른 확인서는 물리적 입지 분석을 포함해야 하고, 해당 입지의 특징적인 바람 관련 측정이나 이웃 풍력발전시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운영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이들 자료는 장기적 전망을 위해 기존 풍력에너지 설비 관련 데이터뱅크에 추가시켜야 한다. 에너지수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풍력에너지설비의 유속이다.
7. 제5호의 P-V 곡선 측정과 제2호의 기준입지에 있는 설비모델별 기준수익 계산 그리고 제6호에 따른 계획된 입지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수익 규정은 2000년 4월판⁵⁾ 검사 및 교정연구실 기능에 관한 일반요구(DIN EN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되거나 국가기관의 참여 하에 평가를 받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8. 초기요금의 연장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수익을 사용할 경우, 제3조 제6호의 발전용량을 고려해야 하며, 상한치는 설비가 연방 공해방지법에 따라 인가받은 최대발전량이 된다. 일시적 발전량 감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5) Beuth 출판사, 10772 베를린